

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

“청년하우스 주거 지원 사업” [전세대출이자/월세] 지원 모집

경상북도와 영천시가 지원하는 「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」에서 영천시 금호읍에 정착을 원하는 타지역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.

2025년 12월

(재)경북테크노파크 원장

I 사업개요(요약)

- 가. 세부사업: 청년하우스 주거 지원사업
- 나. 모집규모: 총 00명
- 다. 지원금액: 최대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(자부담 10% 필수)
※선택 1 (전세대출이자 / 월세)
- 라. 접수기간: 2025년 12월 17일(수) ~ 11월 13일(금)
- 마. 협약기간: 협약체결일 ~ 26년 11월 30일
- 바. 모집대상 및 신청자격: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수혜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
- 사. 대상 주거지역 : 경북 영천시 금호읍 일대

II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

- 가. 세부 자격요건 :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수혜(협약)기업의 대표자 및 임직원
 - 청년 기준 : **협약일이 속한 연도의 1월 1일 기준 만 19세 ~ 만 45세**
(ex. 2026. 5. 1. 협약 시, 2026. 1. 1. 기준 만 19세 ~ 만 45세)
 - 거주 기준 : **소속된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수혜기업 협약일 이후 금호읍으로 주소 이전한 자**
(ex. 2026년 5월 1일에 청년창업 지원사업 협약 시, 5월 1일 이후 금호읍으로 주소 이전한 자)

유형	대상	세부 자격요건
1순위	수혜기업 청년* 대표 및 청년* 임직원	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청년창업, 이전기업, 스케일업 지원 등을 받은 수혜기업으로 협약한 기업의 청년인 대표자 또는 청년인 임직원 * 협약일이 속한 연도의 1월 1일 기준 만 19세 ~ 만 45세
2순위	수혜기업 대표 및 임직원	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청년창업, 이전기업, 스케일업 지원 등을 받은 수혜기업으로 협약한 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

나. 사전지원 제외 대상

- 주거지와 사업장 주소가 동일한 경우
- 직계존속(부모 등)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
-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(중복 지원 불가)
 -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자
 -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, 매입·전세임대주택, 지자체 운영 청년주택(거북이집, 청년세어하우스 등)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
 - 디딤돌대출,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,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, 주거안정 월세대출,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, 청년 임차보증금 이차지원 등 사업
 - 그 외 정부 및 지자체 주거 지원 관련 사업 참여자
- 외국인은 신청 불가능
-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(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)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
- 「민법」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대상자는 공급 신청할 수 없음. 단,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
 -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(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)
 - 직계존속의 사망, 실종선고, 행방불명(신고접수증으로 증빙)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(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,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)
 -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(내국인)가 세대주인 경우 (단,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)

※ 단, 세대구성원 중 아래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,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.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

5.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
6.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"시장·군수·구청장"이라 한다)이 확인한 사람
7.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확인한 사람

-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
III 신청 및 절차

가. 신청 : 신청서류 지원 자격 검토 후 선정

나. 선정순위

- 동일 자격요건 내 경쟁 시 아래 선정순서에 따라 지원자 선정

거주 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→ 청년 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→ 가구원 수가 많은 자 → 추첨

다. 지원자 선정절차



-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전입신고 및 해당 주소지(영천시) 주소를 유지하여야 합니다.
 - ※ 선정 및 사업종료 이후 미유지로 확인되는 경우 수혜 주거지원비 전액 반납
 - ※ 금호읍 내 이사 등의 사유로 주소지가 변동될 경우 금호이웃사촌마을지원센터로 문의 필수
- 1세대 내 2인 이상 중복신청 또는 여러 순위 중복신청 불가하며,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로 합니다.
- 사업장 주소와 주거지 주소가 동일한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,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로 합니다.

IV 세부지원내용

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 전세대출이자/월세 실비 지원(자부담 10%)

- * 임대차 계약서 기준으로 임차인(기업)에게 사후 지급
- * 증빙서류 : (월세) 지원금 신청서(매월) 1부, 월세 납부 이체증명서(매월) 1부, 통장 사본 1부.
(전세대출이자) 지원금 신청서(매월) 1부, *전세대출 이자 납입 증명서(매월) 1부, 통장 사본 1부.
- *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은행(금융기관)에서 발급 가능
- * 대출상품명 및 계좌정보, 이자 납입 내역 등 표시되도록 발급(대출금액 가리고 제출)

V 유의사항

당해 주거 지원은 향후 정부 정책, 관계 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등 강화된 지원 자격에 의해 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
관련항목	유의사항
선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청접수 후 지원 자격에 대한 검색 절차를 거쳐 지원자를 선정합니다. • 지원자로 선정되면 개별 통보되며, 연락처(주소, 전화번호)가 변경될 경우, 즉시 금호 이웃사촌마을 지원센터(경북테크노파크)로 반드시 통보하여야 합니다. ※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(계약안내문 미수령 등)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
지원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지원 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, 지원종료 시까지 지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. • 지원자로 선정된 자가 협약 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협약을 포기(협약식 불참 등)할 경우 지원자로서 지위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. •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지원 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, 지원 자격은 협약 기간 종료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. •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.
개별안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세대출이자/월세 지원의 상세현황(주소, 규모, 임대보증금, 임대료 등) 등의 사항은 지원순번 도래 시 개별 계약안내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.
주소 등 변경통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원자로 선정된 자 및 계약자가 연락처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, 즉시 금호 이웃사촌마을 지원센터(경북테크노파크)로 통보하여야 합니다. 변경 사항 미통보 시 협약이 불가하거나 지원 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기타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임차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은 파손·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 • 임차주택은 임차권의 양도·전대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,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·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•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할 경우 협약이 해제(해지)될 수 있습니다.

[금호 이웃사촌마을 주거 지원사업 협약 해제(해지) 사유]

-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
- 지원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
- 임대차 기간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
- 입주기간(계약기간) 내 타지역으로 주소 이전한 경우
- 기타 임대차 계약에 정한 사항을 임차인이 위반한 경우

VI 접수 및 문의처

가. 접수기간 : 2025. 12. 17.(수) ~ 2026. 11. 13.(금) 18시까지

나. 접수방법 : 홈페이지 접수(한컴오피스, PDF)

접수처	https://www.gbtp.or.kr >공고 · 안내 > 사업공고(경북TP) >청년하우스 주거 지원사업
문의처	(재)경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그린기업지원센터 조현경 연구원 (☎054-339-3355)

다. 제출서류 **※선택 1**

구분	제출서류(2025.12.17. 이후 발급분만 인정)
월세지원 (공통)	① 신청서(서식1) 및 위임장·위임서류(대리인이 접수 시)(서식3) 1부. 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(서식2) 1부.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1부(대출금액 등 민간정보 가리고 제출).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(신청자 명의) 1부. (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원칙으로 하며,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사실 확인시 임대인·임차인(2인) 간 임대차계약서를 인정함) ⑤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. ⑥ 가족관계증명서(상세, 신청자 기준) 1부. ⑦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(전입일, 주민등록번호, 주소이력 포함) 1부. ※ 신청인이 세대원일 경우 주민등록초본(최근 5년 이내 주소이력 포함) 1부.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(세대원 각 1부). : 세대원 과세증명서 등 필요시 추가 제출 요청 ⑨ 사업자등록증 1부. ⑩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직원 여부 확인) 1부. (해당 시)
*전세대출 이자지원	⑪ 소득금액증명원 1부. ※ 무소득자의 경우,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1부. ⑫ 전세대출확인서(= 대출사실확인서 or 금융거래확인서) 1부. ↳ 대출자 명, 대출용도, 대출상품명 등 표시되도록 발급(대출금액 가리고 제출) ※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은행(금융기관)에서 발급 가능

* 전세대출 이차지원 제출서류는 월세지원(공통) 서류도 포함 제출 필수.